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!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4선거구 이정선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

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, 효율성을 높이고,

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나 기타 지침 상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

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

편의에 따라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

서울시의 독단적인 행동을 저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

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‘재계약’의 경우

기존 절차대로 의회 동의 대신

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유지하되,

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

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는 ‘재위탁’의 경우

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